

기타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 정 2009. 3.
제 정 2016. 2.
개 정 2020.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칙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학칙 제28조제3항에서 명시한 자율학 습 및 특별평가에 관한 사항 및 학칙 제39조제2항에 관한 사항, 학칙 제39조제3항에서 명시한 외국어 및 자격증 등의 과정에 관한 사항, 학칙 제39조제5항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기타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2.01.)

제2조 (정의 및 종류) ①기타 학점인정 이라 함은 별도의 과정의 이수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 받고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하며, 학점인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6.02.01.)

1. 사전평가제: 사전평가제라 함은 본교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교과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를 졸업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2. 자율학습제: 자율학습제라 함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학부단위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 쳐 별도의 과제학 습 등을 진행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3. 특별평가제: 특별평가제라 함은 본교와 학점교류 등의 협약이 된 국내외의 타 대학교 및 공공기 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수학 또는 연구, 실습, 등을 이수한 과정에 대하여 학부단위 평가위 원의 심의를 받아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 제1호의 사전평가제의 프로그램에는 교양교육, 전공교육 등의 과정을 포함 한다. (개정 2020.01.20.)

③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칙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학점당 15 시간 이상의 수업에 상당하는 교육 또는 실험·실습·연구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 등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삭제2016.02.01.)

제4조 (삭제2016.02.01.)

제5조 (삭제2016.02.01.)

제5조의2 (삭제2016.02.01.)

제6조 (삭제2016.02.01.)

제7조 (기타사항)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학칙과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규정 및 총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2016.02.01.)

제8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방법)(신설2016.02.01.)

- ①학점인정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학점인정으로 취득한 학점의 이수구분은 이수과정 또는 자격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부단위의 심의 를 받아 교양 또는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학점인정으로 취득한 학점의 성적은 인정(P) 또는 낙제(F)로 기재한다.
- ④제2호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학점인정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학부단 위의 심의 또는

평가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